

決하였습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當委員會에서 執行部側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토대로 關聯法規의 條例를 면밀히 研究하고 신중한 審査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必要性和 合理性이 있다고 判斷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아무췌록 本議員이 審査報告드린 대로 可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그러면 文化教育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 조(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하급교육청에 각각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심의회(이하 “본청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하급교육청에 두는 심의회(이하 “교육청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각각의 소속 직원중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과장·기획예산담당관·행정과장·시설과장 및 건축과장이 된다.

2. 교육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
2. 교육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교육재산의 대부·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교환 및 기부채납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5. 교육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와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재산에 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의뢰한 사항

⑥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각각의 재무과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4·19國立墓地無償使用許可同意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37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4·19國立墓地無償使用許可同意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保健社會委員會 朴德基議員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德基議員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님, 안녕하십니까? 保健社會委員會 所屬 議員 朴德基입니다.

우리 保健社會委員會에서는 지난 8月 8日 宇로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議案番號 17號